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9일, 서영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6.9.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석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
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추어,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조인 선임 절차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참여 규정을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과정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통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된 점을 고려하면, 기존 검찰청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관련 규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59조의16제1항은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추가하면서도 실제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절차

는 현행과 같이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검사가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항의 진술조력인 참여 대상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